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874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3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병진 · 임미애 · 송옥주 · 윤후덕 · 권철승 · 한민수
이상식 · 복기왕 · 이성윤 · 민병덕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한 경우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협박 건수의 45.3%에서 2021년 60.8%로 크게 증가함. 또한 기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8.1%에서 2021년 15.7%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반하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상응되는 처벌규정이 없음.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는 그 죄질과 불법성이 상이하여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u>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 <u>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4조의3¹⁾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한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됨.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856명 중 178명(20.8%)으로 나타나고 있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여부 >

(단위: 명, %)

유포 협박 여부	신상정보등록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유포 협박 있었음	37 (8.5)	70 (14.5)	169 (20.0)	178 (20.8)	454 (17.4)
유포 협박 없었음	397 (91.5)	412 (85.5)	674 (80.0)	678 (79.2)	2,161 (82.6)
계	434 (100.0)	482 (100.0)	843 (100.0)	856 (100.0)	2,615 (100.0)

자료: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2023.12, 510쪽.

한편,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을 개정²⁾하여 종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음.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³⁾,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음.

2) <개정 전후 비교표>

[법률 제17282호]	[법률 제1733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338호 개정이유 참조

이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⁴⁾는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⁵⁾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죄질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 처벌 규정 >

구분	법률명	범죄 유형	형량
일반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4조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제14조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욕망 수치심 유발 영 상물 편집 · 합성 · 가공	(제14조의2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욕망 수치심 유발 영 상물 반포	(제14조의2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 성적욕망 수치심 유발 영 상물 반포	(제14조의2제3항) 7년 이하 징역
		불법촬영물등 소지·구입·저 장·시청	(제14조의2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물 관련 범죄	「청소년 성보호 법」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제11조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아동 · 청소년성 착취물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 · 소지 · 운반 · 광고 · 상영 등	(제11조제2항) 5년 이상 유기징역
		(비영리)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배 포 · 제공 · 광고 · 상영등	(제11조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	(제11조제4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 구 입 · 소지 · 시청	(제11조제5항) 1년 이상 유기징역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신설할 경우 유사한 범죄의 법정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바,

「형법」상의 협박죄 및 강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벌금, 구류,⁶⁾ 과료⁷⁾ 등의 형벌도 두어 죄질에 따라 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인질강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및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형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형에 비하여 상당히 가중되어 있음.

6)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7)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 협박·강요 관련 현행 처벌 규정 >

범죄 유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협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조제2항제1호) 2명 이상 공동 2분의1 가중처벌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	(제32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조제2항제1호) 2명 이상 공동 2분의1 가중처벌	
인질강요	(제324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제14조의3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제14조의3제2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또한, 개정안의 범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상 아동학대중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비영리)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등이 있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강제추행
죄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마약 등을 사용
하여 성매매하게한 죄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법」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성을 산 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죄 등이 있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 규정 >

법률명	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 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144조(특수공무방해치상)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를 방해하여 공무원에 상해를 이르게 한 때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제추행)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 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비영리) 아동·청소 년성착취물 배포·제공·광고·상영 등을 한 자 ④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5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 규정 >

법률명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②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제6조(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람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8)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9조(벌칙)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②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광고·상영 등을 한 자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법정형을 규정할 경우 강요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을 초과함으로써 법관이 법률상 감경9)이나 작량감경10)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하 생략)

9) 법률상의 감경이라 함은 심신장애자의 범죄라든가 미수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함. 「형법」 제55조는 법률상의 감경의 순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0)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을 하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¹¹⁾ 선고가 불가능하게 됨.

한편, 대법원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양형기준”에서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양형에 참작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참조).

법정형 상향 등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과 책임에 상응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 등을 준수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¹²⁾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그 죄질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죄들과 죄질 및 가벌성의 정도가 유사한지 여부,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

11)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6헌바16 결정 참조

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법정형을 상향할 경우에는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 상향 대상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즉,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죄에 대해 법정형 상향을 통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성보호 기반 강화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대법원 양형기준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양형기준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2	강요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